

계 열 문 항 1

<가>

<판결 요약>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배달원(피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함.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결함. 따라서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근거> ① 배달원을 포함한 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이 프로그램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으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② 원고는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③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배달원들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나>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시장 관련법의 근로자 개념은 각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판례도 각 법령상의 근로자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근로자 판단의 공통된 핵심 개념은 ‘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등이다. 현행 노동법의 규율 대상은 모든 종류의 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이며, 상위개념인 이 종속노동을 수행하며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노동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라고 본다. 또한 사용종속관계에는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즉, 종속노동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인적 종속)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이 부상함에 따라 여러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오(誤)분류’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우버 택시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각국 법원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최초로 정립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종속노동 개념이 처음 착안되었을 당시의 연원과 그 본래적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속노동 개념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종속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본질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근대 이행기의 정치적 변화는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로 요약되나, 정치적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종속노동이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노동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다. 둘째, 종속노동에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다면, 종속노동은 인적 종속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대적 노동법을 정립한 쾨른하임어(Sinzheimer)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타인의 처분 하에 종속되어 일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의 논지에 따르면 이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지 노동법을 적용받으려면 인적 종속성을 꼭 입증해

야 한다는 식의 ‘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은 독해다. 진쓰하이머는 실업자처럼 현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들도 노동법이 상정하는 노동자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감독 받지 않으면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가내노동자’ 역시 노동자라고 보았다.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일 지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종속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적 종속성을 종속노동 내지 사용종속관계의 중심 요소로 보아 협소하게 적용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두 시장을 교차시켜 지식과 정보,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였다. 플랫폼이 일단 성립되고 나면 플랫폼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라진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단면시장과 구별된다. 첫째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의 가치가 커져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주체이고 따라서 네트워크가 커져간다는 것은 플랫폼의 가치가 커져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시장의 네트워크가 서로 지원하면서 성장해 가기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이런 이유로 규모의 경제가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경쟁의 본질이 규모의 경제이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플랫폼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스프린터처럼 달려야 한다. 그 결과 플랫폼 경제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승자독식의 원칙이다.

이런 식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호혜적 관계 구축은 애초에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노동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프리랜서 내지 독립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건당 수수료 등의 임금 체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즉, 플랫폼 기업은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 관계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비껴가며 산업재해 등 위험 비용을 개별 노동자에게 외주화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표1>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상위 5개 직종 분포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배달·배송·운송	82.3	68.5	75.9
가사·청소·돌봄	4.6	5.3	-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3.3	14.5	6.2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2.8	5.9	8.5
IT 관련 서비스	2.7	1.2	2.9
미술 등 창작활동	-	-	5.2

* 주업형: 총수입의 50%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31.2만 명)
 * 부업형: 총수입의 25~50% 미만, 주당 10~20시간 미만(26.1만 명)
 * 간헐적참여형: 총수입의 25% 미만, 주당 10시간 미만(8.8만 명)

<표2>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보험 가입 실태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1) 고용보험			
가입	26.9	25.9	46.3
미가입	58.2	48.4	29.1
모름	14.9	25.7	24.6
2) 산재보험			
가입	27.7	28.3	43.6
미가입	52.6	43.6	28.1
모름	19.7	28.1	28.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2021.

1-1. <나>의 밑줄 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30자)

1-2.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가>~<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현은 아내의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텅 것 같은, 가슴이 섬뜩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밑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뉘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년이 못 돼 오십 평 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뉘 집에서는 이백 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칠팔 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다. 곧 광주 가네보 양토부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켄으로 이십 마리를 주문하였다. 곧 목수를 데려다 토끼장을 짰다. 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풀과 아카시아잎을 뜯어 왔다. 두부 장사에게 비지도 맡기었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 해서 건조 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작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이십 명은 천장을 철사로 엮은 께짝에 담기어 한 명도 탈 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할락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께짝 속이 저희 안도(安堵)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이 없이 태연히 주둥이들만 오물거리었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기어 끄르며 덤비었으나, 현은 뒤에 물러서서 그 작은, 그 귀여운, 그리고 박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오륙 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 토끼는 듣던 바와 같이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스무 마리가 아카시아잎이 단풍들 무렵에 사십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린다. 토끼장도 다시 한 오십 마리 치를 늘리려 재목까지 사들이는 때다.

문제가 일어났다. 먹이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잎의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 두부 장사가 가끔 거른다. 오는 날도 비지를, 소위 실적의 반도 못 가져온다. 건조 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히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두부 생산이 준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 먹는 사람이 는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이다. (...)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써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혈값이라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것째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 길이 막히었다. 사십여 마리를 일시에 죽이자니 집안이 일대 도살장이 되어야 한다. (...) 더 늘쿠지나 말고 오래는 걸리더라도 산 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 채로 처분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콜로버뿐이다. (...) 현은 입맛을 짹짹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음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 가지구 미물이라두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옳우?”하는 아내의 위협에 아내가 흠뻑도 아닌 때라, 또 다른 곳도 아니요 저희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밥을 뜯고 앉아 있는 정상이 어째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만 대팻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저고릿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녀석에게까지 다래끼를 하나 둘러메어 가지고 고개를 넘어 M 여전으로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철이었다.

현은 어느 책사에 들렸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써어 있기 때문이다. (...)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뼈들컹거리고, 눈을 푹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 감(感), 박꽃 감은 이젠 아니요, 놓기는커녕 웬만침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뼈들컹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현은 도로 토끼를 갖다 넣고 만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뼈들적거리는 것을 이기느라고 같이 힘을 쓰며 뛰어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현은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드메쯤이라고 그 폭신한 가슴을 더듬어 송곳을 들이박기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 있는, 마치 토끼 형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 이태준, <토끼 이야기>

<나>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다. 경제적 유인은 해당 경제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유인과 불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유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의 증가를 통해, 부정적 유인은 편익의 감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수요량을 줄이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자에게는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지능이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한다.

싱어(Singer)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는 ‘동물복지론’을 주장한다. 그는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快樂) 감수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얼마만큼 행복이나 고통을 산출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싱어는 어떤 존재가 감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존재가 느끼는 쾌락이건 고통이건 그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누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지를 보고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을 우선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싱어의 주장이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종(種)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처우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양자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동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건(Regan)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동물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동물은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목적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권리란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에게 귀속되는 도덕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건, 인간 아닌 동물이건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것이다. 이처럼 내재적 가치가 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레건은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동물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행적인 동물 이용은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 <가>에 나타난 ‘현’의 토끼 사육 결심과 포기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고, 두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60자)